

취약계층 일자리 지원

1 기본 현황

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,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업기간 2021.01 ~ 2021.12		
사업내용	○ 취약계층(시각·정신 장애인)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		
사업비 (당해년도)	587,000천원	(국비)	(사비)587,0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경제정책실	일자리정책과	김재진 2133-5445	남미라 2133-5456	김은경 2133-5452
경제정책실	일자리정책과	김재진 2133-5445	남미라 2133-5456	김문진 2133-5444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0예산액 (A)	2021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				(x-) 0
계	(x-) 587,000	(x-) 587,000	(x-) 0	(x-) 0
민간경상사업보조	(x-) 587,000	(x-) 587,000	(x-) 0	(x-) 0

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1년 예산내역	
민간경상사업보조	○ 손끝채움 희망프로젝트	= 235,000천원

과목구분	2021년 예산내역		
	235,000,000원*1식		
	○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지원	=	352,000천원
	352,000,000원*1식		

3 사업 설명

- 사업목적
 -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을 통한 사회적, 경제적 자립 지원
 - (시각장애인 맞춤 취업지원 사업)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미취업 시각장애인의 전일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 제공 및 경제적 자립지원 도모
 - (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 사업) 취업취약계층인 정신장애인을 동료상담가로 양성하고, 동료 장애인에 대한 상담활동을 통해 사회활동을 유도 및 민간일자리로 연계
- 사업근거
 -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
 -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5조, 제7조
 - 장애인복지법 제56조
- 사업내용
 - 사업기간 : 2021.1.~12.
 - 지원대상 : 시각장애인, 정신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
 - 사업수행주체 : 서울특별시
 - 추진방법 : 사업수행 기관 선정 후 추진
 - 사업의 주요내용
 - (시각장애인 맞춤 취업지원 사업)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등재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전일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의지 고취 및 지속가능한 경제자립 지원
 - (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 사업) 미취업 정신장애인 대상으로, '동료상담가' 양성교육 및 일자리제공

□ 2021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--------	------	--------	--------

계		587,000	
안마사 일자리 지원 추진	2021.01~2021.12	235,000	사업수행 기관 및 참여자 선발, 안마서비스 제공 등
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추진	2021.01~2021.12	352,000	사업수행 기관 및 참여자 선발, 동료상담가 양성 등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8년도	
2019년도	
2020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시각장애인 맞춤 취업지원 사업) 시각장애인 안마사 11명, 관리인력 1명 일자리 창출 ○ (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 사업) 동료상담가 17명 양성 및 연 105회 상담 진행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연계 활성화
 - 장애인복지시설의 중증장애인 및 취약계층 대상 양질의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장애인 및 취약계층 건강증진에 기여 및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활성화
 - 동료상담을 통해, 은둔생활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사회·경제활동 참여 유도